

급여규칙

표준번호(STANDARD. NO PINE-C-040)

- 관리본 (CONTROLLER COPY)
 비관리본 (UNCONTROLLED COPY)

(주) 파인에스엔에스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급여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용어정의)

1. 급여 : “급여”라 함은 회사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사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
 - 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사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임시적,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을 제외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을 말한다.

제 4 조(급여체계)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2/8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급여: 기본급, 직책수당, 기타 제수당
2. 퇴직급여

제 5 조(급여조정)

1. 급여조정은 근속년수 1년 이상자에 한하여 매년 1월1일부로 연 1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조정이 지연되었을 때는 기준 월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단, 급여조정 결정일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급여조정은 전년도 연봉 및 시급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기본 인상을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을 그리고 승진 시 승진 가급율로 구분하되, 별도 정한 기준에 의해 조정 시행한다.
3.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 고과성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전년도 연봉에 1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4. 회사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

제 2 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 6 조(기본급)

사원의 기본급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월급제 : 월정액으로 지급
2. 시급제 :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제 7 조(연장 및 야간 · 휴일 근무수당)

1.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무시간 종료 후 부터 22:00까지, 익일 06:00부터 정규근무 개시 전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3/8

지급한다.

2.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3. 휴일근로라 함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한 휴일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 및 야간 근로 시 각각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한다.
4.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보상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휴가로 대체하여 실시도록 부여한다.

제 8 조(차량보조금)

차량보조금은 사원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 조(직책 및 직무수당)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개발수당)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개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산 후 지급한다.

제 12 조(생리수당)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4/8

여사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3 장 계산 및 기간

제 13 조(계산기간 및 지급기준일)

1. 급여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한다.
2. 급여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4 조(지급방법)

1. 급여는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본인 통장 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단,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급여지급 통장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 주거래은행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5 조(계산방법)

1.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급여의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규의 제정, 개폐나 임용, 복직, 승격 또는 승급 등 신분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급여 계산은 그 시행일 또는 발령일을 기산일로 한다.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5/8

제 16 조(휴직 중 급여)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휴직(병가포함) 기간 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사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3. 전항 1,2항은 제3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 각 항목 이외의 사항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복직자의 급여)

복직 시에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한다.

제 18 조(정직자의 급여)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의 정직 당월의 급여는 발령일 전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정직 해제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3. 정직 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징계자의 급여)

징계결과 감급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6/8

제 20 조(겸직자의 급여)

사원이 타 업무를 겸무할 경우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대기 발령자의 급여)

대기 발령자의 급여는 8시간 근무토록 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며, 기타 직책수당, 기타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전보 발령자의 급여)

신분 또는 조건 등의 변화와 함께 이동 발령된자의 급여는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 23 조(퇴직자의 급여)

1. 근속년수 1년 미만인자 및 1년 이상인자를 불문하고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당월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 24 조(급여 공제의 범위)

1.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공제할 수 있다.
 - 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 ②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2. 월급제 사원이 결근 시 결근 1일당 월급여의 1/25씩 감액 지급한다.

제 25 조(신입 및 경력입사자 초임 급여)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7/8

1. 신규 입사자에 대한 초임 급여는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한다.
2.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수습기간인 3개월간은 월 급여에 80%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퇴직급여

제 26 조(퇴직급여의 지급기준)

1. 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 ① 퇴직급여가 발생된 사원이 계열사 전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계열사로 이관한다.
 - ② 사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 ③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들은 1년 단위로 퇴직급여를 계약종료와 동시에 쌍방합의하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④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1회 이상 재계약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차액분에 대해 정산 지급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퇴직급여의 지급방법)

1. 퇴직급여는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일수에 대해서는 일수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임금조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사원에 대해서는 임금조정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3. 사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근, 정직기간, 감급기간, 감봉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4.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군복무 휴직,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의 근무기간만을 산정기간으로 한다.

(주)파인에스엔에스		급여규칙
PINE Systems & Solutions	표준번호(Sta.No.) : PINE-C-040	개정일자(Rev.Date) : 2019.05.01
	개정 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8/8

5.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퇴직 전 1년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제 28 조(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단, 계열사 전보자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본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2. 근속년수 1년 이상자 중 본인이 퇴직급여중도정산을 요청하여 회사가 지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중도정산 이후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제 29 조(특별 위로금)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이외에 별도의 특별 퇴직 위로금으로 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① 회사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②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한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③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제 30 조(지급시기)

퇴직급여는 퇴직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